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보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66 발의연월일: 2025. 3. 26.

발 의 자:최보윤·김상훈·신성범

최수진 · 서천호 · 임이자

김장겸 · 김 건 · 박성훈

조지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,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의2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행정절차법」(의안번호 제9 364호) 및 「지방공무원법」(의안번호 제936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의2제1항 중 "개선"을 "개선, 「행정절차법」 제5조의3에 따른 인공지능의 도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"개선"을 "개선, 인공지능의 도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50조의2(적극행정의 장려) ①	제50조의2(적극행정의 장려) ① -	
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		
적극행정(공무원이 불합리한		
규제의 <u>개선</u> 등 공공의 이익을	<u>개선, 「행정절차법」</u>	
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	제5조의3에 따른 인공지능의 도	
하는 행위를 말한다. 이하 이	이 <u>ㅂ</u>	
조에서 같다)을 장려하기 위하		
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		
에 따라 인사상 우대 및 교육		
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		
립·시행할 수 있다.		
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	2	
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		
여 각 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		
를 설치 • 운영할 수 있다.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
2.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	2	
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	개선, 인공지능의 도입	
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		
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		
준, 절차, 방법 등에 관한 의		
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	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	

③ ~ ⑤ (생 략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